

#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이광호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이광호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택시업계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